

2004. 9. 16(목) 10:00  
제113회 임시회 산건위 제2차회의

# 기타의안 검 토 보 고

- ①수승대관광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②우강산업(주)건의에 대한 처리의 건
- ③소방도로개설건의에 대한 처리의 건

산 업 건 설 위 원 회

# □ 수승대관광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 : 2004. 9. 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 : 2004. 9. 9
- 라. 의안번호 : 제2004 - 43호

## 2.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

### 가. 제안이유

○ 수승대관광지는 하계휴가와 연계한 국제연극제 관람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 주차장, 공연장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내방객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관광지를 추가확장하는 것으로 관광지조성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 나. 사업개요

- 사업명 : 수승대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 변경내용

구역명	면 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당 초	변 경	증감	
수승대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235,479	297,679	62,200	1986.8.23

○ 주요 변경내용

- 야영장 : 당초 2,780m<sup>2</sup>(841평)→추가 5,316m<sup>2</sup>(1,608평)
- 주차장 : 당초 2,780m<sup>2</sup>(841평)→추가 13,416m<sup>2</sup>(4,058평)
- 펜션(숙박시설) : 3,548m<sup>2</sup>(1,084평 : 37객실)
- 다목적광장 : 8,521m<sup>2</sup>(2,578평)

## 다. 관련절차 이행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실시

- 기간 : 2004.7.12~2004.7.27(16일간)
- 방법 : 도내 일간신문(도민일보, 경남일보)  
군 게시판 게시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
- 제시의견 :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면적 추가확대의 필요성

-거창수승대관광지는 하계휴양시기와 국제연극제 개최기간중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도로와 주차시설, 공연장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내방객들의 불편은 물론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의 교통수단인 노선버스도 운행을 중단함에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쾌적한 관광지 조성과 대외이미지 제고, 국제연극제의 지속발전을 위하여는 시설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 ○ 확대지정과 관련된 문제점

현재 조성된 수송대관광지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시기가 매년 7월 하순부터 8월중순까지 국제연극제가 개최되는 기간으로 이 기간은 약20일 이내로서 동 기간에만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음.

따라서 일시적인 이용시점의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6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현재의 군재정을 감안할 때 각종 계획된 대형사업추진, 지방양여금 감축, 향후 FTA사업관련 준비부담금 등을 감안하면 군자체 재정으로는 사업추진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투자비 세부내역 및 재원조달 방안, 구체적인 사업집행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현재 수송대관광지의 연간수입금액은 3억원 정도가(입장료 5천만원, 주차료 1억6천만원, 야영료7백만원, 썰매장이용료 9천2백만원, 기타 1천만원) 되나 직원 6명의 인건비 총당수준에 그쳐 기타 주차요원등 일용인부임과 시설유지비 등은 별도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임.

그리고 추가조성되는 주차장과 기존주차장은 교행이 불가하여 별도 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되므로 인건비등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하며, 사용중인 오폐수처리시설(100m<sup>2</sup>)도 현재 성수기에는 수용한계를 초과하는 실정으로 별도 증설 또는 신설하여야 하며, 야영장을 추가 조성시 하천의 물놀이시설등 편의시설도 확충하여야 할 것임.

또한, 편입되는 토지중 매수하여야 할 사유토지가 13,600평 정도로서 이에 소요될 금액(13억6천만원)도 군재정 규모를 감안 하면 상당히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 확대지정과 관련된 조치의견

거창군을 대표하는 수승대관광지로서 면모와 거창국제연극제의 지속적인 발전도모, 주5일제 근무여건에 맞춘 시설구비, 현재 편입대상토지의 재산권보호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수승대 관광지를 확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확보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설규모 및 시행시기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따라서 관광지조성사업을 위한 군의회의 의견은 “거창수승대 관광지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현재의 기반시설로는 성수기때 관광객 수용이 곤란할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내방객들의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하여는 관광지를 확대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제시하여 관광지조성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㉔우강(주) 경영환경개선건의에 대한 처리의 건

### 1. 검토경과

가. 접수일 : 2004. 8. 27

나. 건의자 : 우강산업(주) 대표이사 김업호

다. 회부일 : 2004. 8. 27

### 2. 건의요지

(1)도축세는 목적세적 성질이므로 도축장 현대화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 도축세의 50%수준 매년 환원요망

(2)소 작업장 위생처리시스템(소HACCP시설)설치를 위한 사업비 250백만원 지원 요망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가. 건의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1)납부한 도축세중 50%를 매년 반환요구

건의자는 도축세를 목적세로 주장하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납부한 도축세액의 50%를 재정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축세는 시군의 보통세로 분류되어 있어 건의자가 주장하는 목적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거창군세조례의 부칙규정에 의거 2000년부터(2002제외) 2004. 9.30까지 4년간 돼지에 대한 도축세의 50%를 감면받는 혜택(4억원 이상)을 받았음에도 매년 도축세의 50%수준을 반환 또는 재정 지원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한 지나친 요구인 것으로 판단됨.

## (2) 소HACCP 승인 사업비 250백만원 지원

우리군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축산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쫄면인한우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쫄면사료공장 건립, 우수 축생산장려금지원 등 애우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강산업(주)는 매년 돼지와 소의 도축세 150백만원 정도를 납부하는 지역업체로 우리군의 재정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현재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강산업(주)은 자본력이 미흡하여 위생안전확보에 필요한 소HACCP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벌금을 납부한 바 있으며, 현재는 휴업중에 있어 소에 대한 도축세를 징수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관내 식육업소등에서도 인근 고령, 함양 등의 타지역 도축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업소의 물류비부담도 가중되는 실정임.

※우강(주)에서는 소HACCP 미설치로 2회의 행정처분을 받아 추가 적발시는 현 도축시설의 허가가 취소되므로 소도축은 불가함.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시설자금을 보조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나 소HACCP시설이 설치되면 지속적인 도축세 증대(연간 40백만원정도)뿐만 아니라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내 식육업소 편의제공, 지역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서도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가공 및 유통을 위하여 시설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사업비중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관내 기업체 유치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나. 건의에 대한 군의회 처리의견

(1)건의1안의 도축세 50%를 매년 재정지원으로 환원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도축세는 시군의 보통세로 건의자가 주장하는 목적세 성격이 아니며, 2002부터 2004.9.30일까지 도축세의 50%를 감면(4억원 이상)하여 주었음에도 반환요구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인 것으로 판단 불가”한 것으로 처리

(2)소HACCP시설비 지원의 경우는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동 보조요구사업은 지역축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속적인 지방세재원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등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 소요사업비중 일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이를 건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보조사업비의 적정규모에 대하여는 예산심의시 타당성을 검토하면 될 것임)

## 4. 참고자료

- 가. ( )
  - : 440-20
  - : 50
  - 9,030m<sup>2</sup>
  - : 20 , 800 /
  - HACCP (04.5.15 ~ 9.14)
  - 250~399 / , 가 200~250 /

. 2004

- 1,060 / × 120 = 127,200
- 41,000 / × 600 = 24,600
- 2003 : 219,006

### (屠畜稅)

234 2 ( )

屠畜稅 稅率 屠殺 時價 1,000 10  
 第1項 規定 時價 價額 每年 1月 1日 7月 1日 現在 時價  
 基準 市長·郡守가 調査·決定 . <改正 79·12·28>  
 市長·郡守 條例가 屠畜稅 稅率 1,000分 10  
 . <改正 91·12·14>

[本條新設 76·12·31 法2945]

거창군세조례 부칙(개정 2003.9.26 조례 제1685호)

- ( )
- ( ) 2004 9 30 65 2 2
- ( )

### ★ 과세표준액 설정 현황

구 분	2004. 1. 1	2004. 7. 1	비 고
소	4,500,000원	3,700,000원	
돼 지	170,000원	180,000원	2004.9.30까지 50%감면

- : 143.6 26.4 ( )
- 100 , 17 , 183.1 , 25.2

. HACCP

O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 HACCP

가

HACCP

, 가 , , 가

가

(Hazard Analysis)

, 가 ,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

1) HACCP

HACCP

가

가 , , ,

2)

HACCP

3)

4)

( , )  
가

5)

가  
가

HACCP

### ③소방도로 개설건의에 대한 처리의 건

#### 1. 검토경과

- 가. 접수일 : 2004. 8. 5
- 나. 건의자 : 김천리 64-1 강순임 외 79
- 다. 회부일 : 2004. 9. 8

#### 2. 건의요지

김천리 64-1번지 일대 도시계획도로는 지정후 장기간 미개설로 재산권 및 권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골목길이 협소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조속한 기일내 소방도로 개설을 건의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동 도시계획도로는 소로2-46호 및 2-47호 구간으로써 현재 미개설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 5년간 단계별 집행 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 도로는 현재 단계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장은 집행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됨.

동 건의안에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 5개년 계획수립시 동 구간을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건의주민에게 회신(2004.8.3)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

---

1.

,

2.

2-46 , 2-47

3.

5

4.

2005 5 (2006~2010 )  
2005

5.